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4-40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4월 일

제출자 : 강서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상위 관계규정인 ‘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’ 개정(2022. 7.)에 따라 비품의 금액기준 상향

3. 주요내용

- [별표 2] ‘물품의 품종.상태구분’ 중 비품의 취득단가를 “10만원”에서 “50만원”으로 변경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59조(물품의 분류)
- 2)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(행정안전부 지침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4. 2. 28.~ 3. 19.) 결과: 의견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
3) 규제사전심사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
5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(1) 중 “1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94조의2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·처분·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·처분·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59조(물품의 분류) 물품의 품종·상태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.

□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

1) 소모품

○ 소모품의 정의

-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과 같이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
-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

○ 소모품의 종류

-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, 유류 등
 -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, 사무용 소모품, 공구 등
 - 다른 물품을 수립·조립·제작(생산)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, 생산원료, 재료, 건축자재 등
 -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
- ※ 단, 내용연수(조달청고시, 제2021-41호)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(예: 휴대전화기 등)

2) 비소모품

- 사무용 집기·비품·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
 - 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
- 단,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(예 : 50만원)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